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79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10.30)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대상, 수당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촉직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추가(안 제2조제1항제1호)
-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안 제3조제1항제1호)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 다. 심사기준 근거 신설 (안 제3조의2)
- 라. 수당 근거 규정 명확화 (안 제8조)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3명의 위촉대상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취업승인”외에 “취업여부의 확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고,
 -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8조에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참 고 자 료

1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29>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2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
- [전문개정 2009.2.3]
- [제목개정 2011.10.28]